

SW.비즈 모델 출원해야 보호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특허로 보호가 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저작권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싶다면, 일반 발명과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저작권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등록 신청서와 프로그램 복제물을 CD롬에 담아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가 그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기술 사상을 보호하는 반면,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를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특허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군, 아름다워”는 “아름답다”와 개념이 같다고 보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저작권 관점에서는 이들의 표현이 다른 것으로 간주해 같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993년의 서울민사지법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법적 보호의 강도와 범위는 특허 쪽이 훨씬 강력하다. 한편 영업 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지난해 8월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부르는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한 규정으로 보면 된다.

이 심사지침에서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일단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장치와 관련되거나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면 특허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 유형은 피라미드 판매 방법과 같은 다양한 영업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제외하면 일단은 특허의 대상이 되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을 출원할 때 주의할 점은 이들은 그 내용이 아무리 쉽고 간단하더라도 실용신안으로는 출원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신안은 구체적인 물건에 관해서만 보호하지만 특허는 물건과 방법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경제*

“공개된 ‘프로그램 소스’ 저작권보호 대상 아니다”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한글과 컴퓨터사 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供義鉉)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훈민정음’의 저작권사 삼성전

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중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본사 퇴직 직원들이 훈민정음의 일부 프로그램을 베껴 제작한 것”이라며 넷피스 사이트의 운영업체 한컴 등을 상대로 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핵심코드)는 이미 공개돼 다른 업체들도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온 이상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분이나 프로그램 작성 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본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컴은 지난해 2월 훈민정음 개발에 참가했던 삼성전자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B사에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지난해 8월부터 자사의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자 삼성측은 자사의 저작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처 대한매일

특허권 전용부품 생산도 특허침해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독점권)를 독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위의 행위를 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며 이를 직접침해라고 한다. 여기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의 비영리적 사용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사업에 의한 실시는 비영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침해로 본다.

또한 위의 행위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리상의 원칙이므로 구성의 일부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침해행위를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만일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에 필연적으로 직접침해에 이르게 되는 예비적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일부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발명이 실현하고 있는 기술사상을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제도로서,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로펠라, 모터, 프로펠라 보호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선풍기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제3자가 다용도의 일반적인 프로펠라가 아닌 특허받은 선풍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펠라를 생산하면 간접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위의 예에서 제3자가 생산한 프로펠라가 반드시 특허받은 선풍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 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는 부족하고 경제적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출처 매일경제

금융상품도 “黠어” 시대

“우리 은행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담았으니 베끼기를 막아달라.”

평화은행 이동연(42) 마케팅 부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첫 권리 주장인 셈이다.

배타적 권리란 일종의 특허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 개발한 사람의 이익(선발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신상품은 인터넷 대출상품으로 인터넷에서 대출신청과 심사, 그리고 승인이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특징.

다른 은행의 인터넷 대출상품은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여서 실제 본인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영업점을 한번은 찾아야 하지만, 평화은행이 선보일 신상품은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받고 대출 위험을 떠안는 것도 색다르다.

두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을

돌려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더 철저히 평가하는 효과도 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모두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어려운 금융기관이어서 남다른 열정으로 신상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을 개발한 주역인 이동연 부장은 지난 3월 평화은행에서 첫 여성부장이 되었다.

그는 조흥은행 위성복 행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사양했으며, 지난 4월 청와대 금융인 모임에는 홍일점으로 참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 새 상품이 나온 뒤 6개월 안에 베끼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상표권 침해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만 해당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해당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원규, 柳元奎부장판사)는 영국의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사(Rolls-Royce PLC)가 자신들과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남 창원의 S정밀 대표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운용하는 홈페이지에는 원고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유사한 영업행위도 하지 않는 만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도메인으로 rolls-royce.com과 rolls-royce.net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S정밀측이 rolls-royce.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 운영하자자사의 등록상표권과 등록 서비스권을 침해당했다며 S정밀의 도메인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 세계일보

작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치된 판례도 드물다.

영미법의 경우 패러디 자체보다는 패러디가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대개 원작자의 동의는 법적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미국의 패러디 작곡가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패러디가 노래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패러디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저작물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남의 노래를 패러디해 자신의 회사 광고에 사용한 운수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태지의 소송 결과는 패러디가 성행하는 국내에서 의미 있는 첫 판례가 될 것이다.

출처 한국일보

패러디와 저작권·인격권

지난 달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패러디에 대한 법적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패러디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저작권법 상의 재산권과 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이라는 원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 현재 국내 법에는 패러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사상, 감정의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4항)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다. 한국영상음반협회에 따르면 패러디에 대해 저

유명도메인 선점관리 장담못해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청에 등록된 의류 등 실물에 대한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지만 민간구에 의해 선착순으로 등록되는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 규제받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유명상표를 보호해 왔다.

게다가 지난 7월 1일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희석시킬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돼 유명상표를 타인이 먼저 인터넷상에서 선점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지적재산권 소송 전담부인 서울지법 민사12부 정장오(鄭長祚)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유명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이종(異種)의 영업을 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유명업체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갖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업종을 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줄 여지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물류운송업체 페더럴 익스프레스사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 소송을 당한 ‘fedex.co.kr’는 지난해 “이종의 영업을 한 만큼 상표권 침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자신의 도메인을 지켰다. ‘dow.co.kr’(다우케미컬), ‘viagra.co.kr’(비아그라)도 마찬가지로 승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해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들의 결론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들 도메인이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회석시키는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고법 담당재판부는 이들 사건 중 일부를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라며 조정 등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개정법은 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된 조항을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명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까

지 문제가 없던 경우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과 명성 훼손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도메인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 개정법의 문제점=이번 법 개정은 당초 지적재산권의 명확한 보호와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강대국과 해외유명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자상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임성우(林成雨) 변호사는 “유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회석시킬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규정 자체만으로 볼 때 확대 적용될 여지가 많다”며 “통상압력 등의 요인에 의해 무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외국 유명상표만 보호해주는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 염려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유명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보유한 사람이 6개월동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은 자신의 도메인을 포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임변호사도 “신설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탄력적 해석과 운영에 기대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와 달라 별개의 재산권으로 봐야하는 데도 상표와 같은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도메인 선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스쿼터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선의의 도메인 선점자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분리해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경향신문

담배 상표 “마일드” “라이트” 금지

발기부전을 상징하는 아래로 측 들어진 담배 그림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래픽을 담뱃갑에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캐나다가 이번에는 담배 상표에 마일드(Mild)나 라이트(Light)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스턴 글로브는 캐나다의 앨런 룩 보건장관이 내년 중에 담배상표에서 이들 단어를 삭제하는 규정을 발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룩 장관이 “라이트나 마일드 상표를 단 담배 역시 보통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다. 담배에 마일드나 라이트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담배 제조업체들이 캐나다에서 영업을 하려면 담배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담배 회사들은 “라이트나 마일드란 단어는 담배의 향이나 맛을 나타내는 것이지 건강에 덜 해롭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금연운동단체들은 “캐나다의 자존심을 세우는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특허권과 빙부 차

최근 이동통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

술 특허료 문제로 한국 기업과 미국의 웰컴사간에 분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서 CDMA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큰 이익을 본 웰컴사가, 중국에서는 그 기술을 한국의 절반 수준 로열티만 받고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로열티 최혜국으로 대우하겠다는 협정에 위배되며, 특히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것이라는 주장이다.

▷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특허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등 바이오 산업에서의 특허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내려달라는 시위가 있었지만,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이 현지 환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3월 일방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첨단 약값이 비싸지는 원인이 지난친 특허료 때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 특허제도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구 성과에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를 촉진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특허료는 제품 값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가격을 높이기 마련이다.

14세기경 특허제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도 특허권의 남발로 물가가 양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17세기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매특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일이 있다.

당시에는 생필품을 특히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 생활을 보호했지만, 21세기에는 첨단 의약품, 통신 기기도 일반 시민들에게 필수품처럼 느껴진다.

▷ 지난 수세기 동안 질병을 퇴치하고 생산력을 증가시켜 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과학기술이, 이제 다시 경제력에 의한 차별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아이러니다.

특허권의 추구도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도(襟度)가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 동아일보

인터넷 지재권 도용 방지도 책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 유통을 방지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과 파일이 판치는 국내 인터넷업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전속계약 한 가수들의 노래를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끼리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도록 방조했다며 사이트 운영자인 인터넷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인터넷제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파일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록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서비스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운영중인 다른 사이트에서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노래를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권리)을 갖고 있는 노래를 특정한 파일로 변환시킨뒤 컴퓨터 서버에 저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이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등 존립위기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사이트들에서 네티즌들이 서로 파일 동영상 등을 올려놓고 주고받는 사례가 흔하다”면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서 자유로울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저작권법으로 최신 인터넷 기술을 재단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정보를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면서 “저작권 보호기준이 인터넷 속성을 고려해 새롭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발특 2001/10